#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이상식・안호영・김문수

염태영 • 이병진 • 이언주

민병덕 · 김준혁 · 서미화

부승찬 · 김성회 · 손명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전부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르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행정·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음.

이에 따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등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 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, 지원위원회의 설 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현 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

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,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(안제3조 및 제4조)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특례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8조).
- 마.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에게 사무특례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음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바.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·감

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특례시와 도,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13조).

- 사.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·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- 아. 특례시의 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 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- 자.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특례시가 제10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 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
##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 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특례시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 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.
  - 2. "도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도의 책무) ① 국가는 특례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·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 및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④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특례시의 책무)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- 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, 운영,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 및 특 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 조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  - 2. 특례시의 행정·재정적 특례 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

- 3. 제12조에 따른 사무특례협약 체결의 권고에 관한 사항
- 4. 제13조에 따른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특례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8조(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특례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 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 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 와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  - 2. 특례시의 행정·재정자주권 제고, 사무처리 지원 및 제3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  - 3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  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.

-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.
-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 무총리가 위촉한다.
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
- 2.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)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무특례) 특례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  - 1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제56조, 제58조, 제58조
    의2, 제70조, 제70조의2 및 제73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, 조사・측량, 조성계획 승인・승인취소, 준공검사 및 관광특구 지정, 조사・분석 의뢰 및 평가 등

- 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 적지역의 지정 협의
-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, 등록의 말소 및 보조금의 지원·환수 등
- 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
- 5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9조 각 호에 따른 사무
- 6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
- 7. 제11조에 따른 사무특례협약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 8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
- 제11조(사무특례에 관한 협약) ①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(이하 "사무특례협약"이라 한다) 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② 특례시의 장은 도지사에게 사무특례협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례시의 장은 사무특례의 종류, 사무특례협약 체결의 사유, 사무특례의 이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무특례협약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사무특례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특례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체결하지 아

- 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무특례협약의 취지 및 내용을 보 고하고, 같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특례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사무특례협약 체결의 권고)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에게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13조(영향평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(이하 "영향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례시와 도 및 인근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를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도지사 및 특례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의 행정·재정 운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연구기관의 지정) ①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관련

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 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·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(이하 "연구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연구·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·절차,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5조(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) ① 특례시의 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·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·기 간·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특례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특례시에 대한 지원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특례시가 제10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7조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) 국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·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